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-11호

「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23일

강릉시의회의장

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정이유

-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나.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다.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라.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118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
조례안 1부. 끝.

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군용비행장”이란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다.
2. “소음피해”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·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.
3. “소음대책지역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.
4. “인근지역”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4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
2.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
3. 소음피해 지역 환경 개선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